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「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」

◇ 제·개정 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2 및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에 의거 「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」 고시의 교체 주기(24개월)가 도래함에 따라,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궐련 등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

궐련, 파이프담배, 엽궐련, 각련, 냄새 맡는 담배에 대한 10종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함

나.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

전자담배, 씹는 담배, 물담배, 머금는 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함